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45187 판결 [공사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4518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가소44622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하

담당변호사 홍경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래

담당변호사 황봉환

변론 종결 2023. 6. 15.

판결 선고 2023. 7. 13.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가소44622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5.부터 2023.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C은 2021. 6. 4. D(실제는 E라고 참칭하면서 진행하였다)와 사이에 F매장 G대점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발주사 : 원고, 도급자 : H 대표자 피고, 공사금액 : 12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21. 6. 5.부터 2021. 6. 28.)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6. 5.부터 2021. 6. 30.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공사대금 중 1100만원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한편, D는 2023.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아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D)은 서울 마포구 I에서 B(피고)로부터 도장 날인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의 '발주사'란에 'F매장 G대점', '공사명'란 'F매장 G대점', '계약금액'란 '일천이백오십만, 12,500,000', '부가세액'란 '일백이십오만, 1,250,000', '공급총가액'란 '일천삼백칠십오만, 13,750,000', '납품 또는 시공장소'란 '서울 마포구 I건물 1층 우측', '제1조[공사금액]'란 '일천이백오십, 12,500,000', '제2조[대금지불] 계약금'란에 '2021. 6. 4. 삼백칠십오, 3,750,000, 2021. 6. 14. 육백이십오, 6,250,000, 2021. 6. 28. 이백오십, 2,500,000', 계약서 제3쪽 여백 부분에 'H(F매장G대점) 진행담당자 E는 제출한 13,180,000 견적내용을 테이블 12,500,000원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A(원고)'라고 각각 기재한 뒤 B의 이름 옆에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사계약의 상대방 A의 대리인 C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이 사건 갑 제1호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원고는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D에게 공사진행을 독촉하다가 2021. 8.경 피고에게 이체한 공사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3, 갑 5~7, 갑 16~17, 을 4~6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 을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의 기망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고가 관리·지배하고 있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보았고, 원고에게 11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및 검토

(1) 주장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실제 공사계약한 D 사이의 공사계약은 유효하다. D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비를 수령하면서 자신의 피고에 대한 별개의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곧바로 송금하게 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다.

(2) 검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서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아도, 원고와 D 사이의 의사 합의에 의하여 D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D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의 상대방이라는 전제의 피고 주장은 이미 이유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공사계약 이전에 D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송금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부로 평가될 뿐 원고의 D에 대한 급부와 D의 피고에 대한 급부가 결합된 단축급부라고 볼 여지가 없다(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의 법리는 급부의 상대방과 이익을 얻은 사람이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급부의 상대방과 이익을 얻은 사람이 모두 피고인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가 원고로부터 송금액을 편취하여 피고에게 급부한 것이라는 관점(편취금원에 의한 변제)에서 살펴보더라도, D가 편취금원에 대한 처분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사실상 지배하는 상태)하여 이를 피고에게 급부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D의 피고에 대한 급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하도급대금에 대한 D의 유효한 변제라는 관점에서도 이유 없다.1)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송달일인 2023. 4. 5.부터2)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임민성

판사차은경

판사김진철

1)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피고가 직접 이익을 얻었을 뿐, D는 송금받은 돈에 대한 처분권이나 관리권한을 갖지 못하였고, 따라서 D의 급부가 포함되지 않는 사안이므로, '편취금원에 의한 변제'에 터 잡은 위 판례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한 시점인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한때, 즉 청구변경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등 참조),